

[별표 4]

발굴된 매장유산 위치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(제26조 관련)

구 분	유 의 사 항
일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사구역도, 유적위치도, 유구배치도, 개별유구실측도, 총위도 등을 반드시 작성</li> <li>- 조사구역도 및 유적위치도는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:5,000 이상의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완료 신고 시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</li> </ul>
조사구역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기본도(수치지형도, 수치해도, 수치연안정보도, 수치지적도)에 정확한 구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, 원, 점, 삼각형, 사각형 등 추상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않음</li> <li>○ 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 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</li> <li>○ GPS 좌표값 기재시, 측지기준계(한국측지계, 세계측지계), 회전타원체(Bessel, GRS80, WSG84), 투영법(TM, UTM),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</li> <li>○ 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(95%) 기준 1m 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, 특히 고도(古都)지역은 DGPS,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하여 좌표값을 취득</li> <li>○ 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경계를 반드시 1:5,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표시. 발굴구역을 1:5,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,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</li> </ul>
유구배치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발굴조사 범위,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,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. 이 경우, 도엽명과 축척을 알 수 있는 축척과 방위(자북, 진북)를 반드시 표시</li> <li>○ 유구배치구역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를 위하여 고정밀 GPS를 이용하여 배치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</li> <li>○ 유구배치구역은 발굴조사구역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구역범위를 정확히 표시토록 함</li> <li>○ 유구배치도의 유구표시는 심볼화 표기를 금하며, 유구의 형태, 배치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되, 유구의 종류,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 표시</li> </ul>